

5.1.6 생활관규정

제정 1996. 06. 19.
개정 1996. 12. 13.
개정 2000. 04. 21.
개정 2009. 09. 07.
개정 2011. 10. 25.
개정 2016. 11. 15.
개정 2018. 0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본 생활관은 초당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라 칭하며 초당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8.01.25>

제3조(업무관장)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11.15>

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 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이하 “관생”이라 한다.) 아닌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1.25>

제6조(관생활동) 관생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18.01.25>

제7조(관생수칙 및 내규) 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고 명량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 및 내규를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8조(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6.11.15>

③ 생활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1.10.25.>

- 제9조(임무)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지도교수는 관장을 보좌하여 관생들의 생활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교무과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2018.01.25>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생활관 사무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6.11.15>
 2.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교직원 입사자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관생수칙 위반으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1.10.25.>
3.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
4. 삭제 <2016.11.15>
5. 휴학 중인 자
6. 직전학기 중도 퇴사자(단, 병역입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0.25.>
7.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 기간 중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8.01.25>

- ② 관장은 관생선발기준에 의하여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 통지한다. <개정 2011.10.25.>

③ 삭제 <2016.11.15>

④ 관생의 선발기준은 따로 정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모든 관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교 생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8.01.25>

제13조의1(호실배정) 호실배정은 각 호에 의하여 생활관에서 정한다. 배정된 방은 관생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동할 수 없다. <개정 2018.01.25>

①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실 배정

② 관생의 희망에 따라 호실배정

③ 신입생은 신입생들끼리 사용하도록 호실 배정

④ 삭제 <2018.01.25.>

제14조(입사등록) 입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비 및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15조(퇴사처분)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처분하고 관생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한다.

1.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삭제 <2011.10.25.>

3. 휴학, 자퇴, 제적된 자<개정 2016.11.15>

4. 기타 공동생활 등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로 보건소장이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16.11.15>

6.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15.><개정 2018.01.25>

7.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진단서 미제출자 <신설 2016.11.15>

제16조(퇴사신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및 시설확인서를 받아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한 후 퇴사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제17조(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경 비

제18조(경비부담) 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사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15., 2018.01.25>

② 중도퇴사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를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개정 2011.10.25. 2016.11.15. 2018.01.25>

③ 방학 중 기숙사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15.>

④ 입사일 이후 추가 입사자의 경우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입 사 일	공제일
월 1일 ~ 5일 사이 입사시	없음
월 6일 ~ 10일 사이 입사시	5 일분
월 11일 ~ 15일 사이 입사시	10 일분
월 16일 ~ 20일 사이 입사시	15 일분
월 21일 ~ 25일 사이 입사시	20 일분
월 26일 ~ 30일 사이 입사시	25 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⑤ 2항에 의한 퇴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신설 2016.11.15.><개정 2018.01.25>

퇴 사 시	공제일
1일 ~ 5일 사이 퇴사시	5 일분
6일 ~ 10일 사이 퇴사시	10 일분
11일 ~ 15일 사이 퇴사시	15 일분
16일 ~ 20일 사이 퇴사시	20 일분
21일 ~ 25일 사이 퇴사시	25 일분
26일 ~ 30일 사이 퇴사시	30 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 다만 학기별 퇴사지정일 30일 이후 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중간 퇴사 시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불한다.

제19조의1 삭제 <2018.01.25>

제20조(생활관비 납기) 생활관비는 매학기 납부하고 그 납부 기간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2011.10.25.>

제21조(생활관비 용도) ① 생활관비는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 소모품비, 비품비, 수선비, 비용,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요원 급료를 총당 총당한다. <개정 2016.11.15>

② 생활관비는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취사기구비, 소모품비, 취사원 급료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15>

제22조(생활관비 예산과 결산) ① 관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당해연도 경과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23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로 정한다.

제6장 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 <신설 2016.11.15>

제24조(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 ① 생활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이하 “사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8.01.25.>

제25조(구성 및 최고결기구) 사생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각 관 동장(은행관, 한마관, 동백관, 우의관) 1명, 각 층의 층장 1명씩으로 구성한다. 이 중 회장, 총무, 동장은 “집행부”라 칭하며, 모든 사생회는 임원으로 분류한다. 집행부는 사생회의 최고 결기구로 두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신설 2018.01.25>

제26조(사생회의 권리와 활동) 사생회의 권리와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1.25>

1. 사생회장은 사생회의 대표와 기숙사 관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사생회 층장과 동장은 사생회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를 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사생회 임원은 사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사생회 임원은 생활관 관생수칙에 의거 관생에게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5. 사생회 임원은 생활관 입사, 퇴사 및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6. 사생회 임원은 사생회 자체 전체회의, 관 회의, 점호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7. 사생회 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숙사 규정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8. 임원은 기숙사 규정에 따라 각 층의 관생 별점과 시설물을 관리한다.
9. 모든 임원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점호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 각 관의 1/3이상 대리자 생길 시 조정하여 1/3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10. 사생회 임원은 기숙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한다.
11. 기타 이 사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활동을 한다.

제27조(사생회 지원자격) 사생회의 집행부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을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8.01.25>

① 회장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는 다음 학기에 4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2.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별점이 없는 학생
3. 직전학기 사생회 임원 경험이 2학기 이상 있는 학생
4.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② 총무 및 동장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는 다음 학기에 2~3학년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2. 직전학기 성적 2.6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3. 직전학기 사생회 임원 경험이 1학기 이상 있는 학생
4.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③ 임원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별점이 3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2. 생활관 입사경력이 1학기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3.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한 학생

제28조(사생회 선출방법) ① 사생회 회장의 선발은 제27조1항에 해당하는 후보로 제한하며, 2학기 종강 한 달여 전에 행정실에 후보신청서 제출을 완료한다. 차기 회장 선출은 당해연도 사생회 임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신설 2018.01.25>

② 사생회의 총무, 동장 선출은 제27조2항에 의거하여 회장이 직접 선출한다.

③ 사생회의 총장은 매 학기 말 공고하여 지원자에 한해 당해연도 사생회 임원의 면접 후 차기연도 집행부(회장, 총무,동장)에 의해 선발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관생선발기준

1. 선발기준 배점 (총점 : 45 + 45 + 30 = 120점)

① 통학거리 (45점) <개정 2011.10.25.>

1. 목포 무안 광주 나주 함평 (10점)
2. 그 외 전남지역 (30점)
3. 기타지역 (45점)

② 학점 (45점)

- 재학생 : 입사전 한 학기 학점 평점평균 × 10점
- 복학생 : 휴학전 한 학기 학점 평점평균 × 10점

③ 직전학기별점 (30점) <신설 2011.10.25.>

- 0 점 → 30점
- 1 점 → 27점
- 2 점 → 24점
- 3 점 → 21점
- 4 점 → 18점
- 5 점 → 15점
- 6 점 → 12점
- 7 점 → 9점
- 8 점 → 6점
- 9 점 → 3점
- 10점이상 → 0점

2. 관생 선발 <신설 2011.10.25.>

- 1. 장애인, 신입생을 우선 선발원칙으로 한다.

3. 삭제 <2011.10.25.>